

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

개정 2019. 11. 22. 규정 제805호

1. 개정사유

- 박사학위과정 공동 논문지도교수제를 시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폭을 넓히고,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연구자를 배출하고자 공동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선정에 대한 제반 규정 마련
 - ※ 38개의 국립대학 중 18개의 대학에서 공동 논문지도교수제 시행 중
- 대학원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원생 학위취득을 촉진시키고자 공신력 있는 대체강좌를 개설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개정
 - ※ 연세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경희대학교, 홍익대학교 등 대학내 어학원 또는 국제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하여 진행되고 대학원에서는 외국어시험 합격 인정

2. 주요내용

- 박사학위과정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및 선정하는 규정을 신설 (안 제4조제4항)
-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 (안 제10조제5항)
- 그 밖에 자구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, 「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필요 없음
- 라. 기타사항 : 대학원 발전과제 TF팀 보고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
- 마. 불 입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**선정 시기는**” 을 “**선정은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지도교수**” 를 “**논문지도교수**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박사학위과정 원생은 박사과정 둘째 학기에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
2.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체육학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

제5조제1항 중 “**자와 전임교원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**” 을 “**원생과 지도교수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원생은**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도교수가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
부 칙(제805호, 2019. 11. 22.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논문지도교수 선정)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지도교수</u>가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담당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논문지도교수 선정) ① ----- <u>선정은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논문지도교수</u>가 ----- -----.</p> <p>④ <u>박사학위과정 원생은 박사과정 둘째 학기에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</u></p> <p>1. <u>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</u></p> <p>2. <u>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 과목이 체육학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</u></p>
<p>제5조(논문지도교수 변경)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<u>자와 전임교원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</u> 지도교수변경원(사유서 첨부)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<u>지도교수 변경원은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1학기 전,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2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전임교원이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논문지도교수 변경) ① ----- ----- <u>원생과 지도교수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원생은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③ <u>지도교수가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0조(외국어시험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외국어 시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</u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제805호, 2019. 11. 22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 제4항 및 제10조제5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</p>